

##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안

의안 번호	104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2008. 5. 9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### 1. 제안사유

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옥외  
광고 정비기금의 설치 조항인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제6조의2가 신설됨에  
따라 부 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조례를 설치하여 기금의 관  
리·운영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골자

가. 기금의 재원(안 제2조)

- (1)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제6조의2 제2항 각 호의 재원
- (2) 옥외광고물 허가(신고)수수료, 과태료, 이행강제금
- (3) 일반회계의 전입금, 국가 또는 시·도의 보조금

나. 기금의 용도(안 제3조)

- (1)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제6조의2 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
- (2)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
- (3)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

다. 기금운용위원회 설치 및 구성(안 제6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제6조, 제6조의2 「지방자치단체 기  
금관리기본법」 제1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예고 : 2008. 3. 10 ~ 3. 31(22일간) ▷ 제출의견 없음

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 호

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제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및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금의 재원) 부산광역시 사하구(이하 “사하구”라 한다) 옥외광고정비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제6조의2 제2항 각 호의 재원
2. 그 밖의 수익금

제3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.

1.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제6조의2 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
2.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
3.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

제4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고 세입세출예산에 따르지 아니하고 관리할 수 있다.

② 기금은 사하구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③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,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제5조(회계관계공무원)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·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.

1. 기금운용관 :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
2. 기금출납원 :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

제6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.

④ 위원은 예산부서의 장 및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과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.

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.

**제7조(위원회의 회의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장이 소집하며,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8조(위원장의 책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.

**제9조(간사)**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가 된다.

**제10조(수당 등)**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1조(준용)** 기금의 관리·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